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9. 20 선고 2023가단23788 판결 [무효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김호준, 신제영, 김현

2. C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와
2017. 11. 28. 접수 제244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D에게 2017.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2. 20. D으로부터 강원도 소재 토지를 매매대금 2,1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자 D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12747호)을 제기하여 2008. 5. 21. ‘D은 원고에게 2,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의 시효를 연장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가소8218호)을 제기하여 2018. 11. 14.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 B은 2017. 9. 9.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2017. 9. 9.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명의신탁을 약정하고 피고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D에 대한 판결금채권에 기하여 D을 대위하여 D과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와 2017. 11. 28. 접수 제244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D에게 2017.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혜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구리시 E에 있는 F아파트 G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8층 아파트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구리시 E 대 33550.8㎡

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H호 철근콘크리트조 84.92㎡

4. 대지권의 표시

1소유권대지권 33550.8분의 42.462. 끝.

